

- 앤드류 쿠오모(Andrew Cuomo) 뉴욕 주지사는 올해 초 뉴욕주가 채택한 아동용품 화학물질 공개법 개정안에 서명함.
- 어린이안전제품법(Child Safe Products Act)에 따라 다양한 아동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우려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공개해야 하고 뉴욕주에 특정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.
- 해당 법에 따라 뉴욕주 환경부는 “우려화학물질(Chemicals of concern)” 및 “우선순위 화학물질(High-priority chemicals)”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지정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물질 사용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함.
- 2023년 1월부터 석면, 벤젠 또는 트리스 (1, 3 디클로로-2-프로필) 인산염(Tris (1, 3 dichloro-2-propyl) phosphate), 이 3가지 물질의 양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만든 제품은 뉴욕주에서 판매할 수 없음. 단, 예외는 존재함.
- 해당 법의 적용의 받는 제품으로는 유아용품, 장난감, 카시트, 학용품, 아동용 가구/침구/장신구/옷 등이 있음.
-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2년간 첫 번째 우려화학물질 목록을 결정하게 됨. 그러면 제조업체는 12개월 안에 목록상의 화학물질 중 PQL(Practical Quantification Limit, 정량한계) 이상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.